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1. 29.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1. 16. 홍지광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2026. 1. 20.

다. 상정일자: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6. 1. 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홍지광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보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감증명서 요구를 최소화하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시 제재 규정 신설함(안 제25조제3항)
- 인감증명서 제출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도록 함(안 제27조의3)
- 폐지된 중앙정부 지침을 삭제하고, 조문을 현행화 함(안 제28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합의: 경제진흥과(시장활성화팀)와 합의되었음
- 입법예고: 2026. 1. 9. ~ 1. 15. (제출된 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가. 개정 목적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16일 홍지광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해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조사업의 추진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제재 사항이 조례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조금 관리의 실효성과 제도적 통제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또한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 최소화 권고 등 행정 환경 및 제도 운영 여건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 일부 규정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방 보조금 부정 사용 시 제재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아울러 현행 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것임.

나. 주요 내용

(1)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시 제재 규정 신설(안 제25조제3항)

- 상인회가 제출한 자료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이 해당 상인회를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생략)</p> <p>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u>1.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u></p> <p><u>2. 3. (생략)</u></p> <p><u><신 설></u></p>	<p>제25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u><삭 제></u></p> <p><u>1. 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u></p> <p><u>③ 구청장은 제2항 및 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가 제출한 자료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u></p>

(2) 인감증명서 제출 요건 완화(안 제27조의3)

- 사업 추진 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 철회 시 제출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함.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3(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고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 <u>후, 인감증명서</u> 또는 「 <u>본인서명사실 확인</u>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u>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u>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 ----- ----- ----- ----- <u>후, -----</u> ----- ----- <u>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u> <u>신분증 사본을 -----</u> -----.

(3) 현행과 맞지 않는 조문 정비(안 제28조)

- 폐지된 중앙정부 지침을 삭제하고, 현행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시설물의 철거)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인가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설물의 철거) ----- ----- ----- ----- ----- -----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 ----- ----- ----- ----- ----- ---.

다.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와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시 제재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 제한·배제 등의 제재 조치를 구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보조금 관리의 실효성과 제도적 통제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인감증명서 제출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항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조치로서 행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이미 폐지된 중앙정부 지침을 삭제하고, 현행 서울특별시 지침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향후 조례 적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됨.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 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